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81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김남근·김남희·김용만

김우영 · 김원이 · 김준혁

김현정 · 노종면 · 모경종

문금주 • 문대림 • 박균택

박선원 • 박정현 • 박해철

손명수 · 송재봉 · 안도걸

양부남 • 염태영 • 이건태

이광희 • 이기헌 • 이재강

이재관 • 이훈기 • 임호선

정일영 · 진성준 · 한정애

의원(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1조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제판관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113조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

처분결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경우에도 최소 6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7인 이상이 있어야 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6인 이하의 재판관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필요한 선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헌법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재 판관의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다만, 이 개정법률 시행 시에 이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임기종료한 헌법재판관이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기종료 시 계속사무) 제7조제1항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종료한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재판관 임기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시에 시행한다.

제2조(임기종료 시 계속사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시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때 그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하는 재판관은 이 법 시행 직전 임기가 종료한 재판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2(임기종료 시 계속사무)
	제7조제1항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종료한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사
	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재판관 임기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